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 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4. 2. 16(금) 10:00

## 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 
조례안  
(교통건설국 건설행정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케이블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96호
- 나. 제 출 자 : 정순기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2. 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2. 2.

## 2. 제안이유

지역 내의 공중케이블 및 폐사선 난립 문제와 관련하여 민·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다.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라.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한 정비추진단의 설치 및 구성(안 제5조)
- 마. 정비추진단의 기능 및 운영(안 제6조 및 안 제7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35조의2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기 타
  - 1) 입법예고: 2024. 2. 5. ~ 2024. 2. 13.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구청과 구민이 함께 정비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 나. 주요 내용

- 1)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  - 정비추진단 : 공중케이블 정비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청과 구민이 함께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모임
- 2) 구청장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3)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4)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한 정비추진단의 설치 및 구성(안 제5조)
  - 구성 : 위원장 및 위원 15명 이내
  - 임기 : 1년
- 5) 정비추진단의 기능 및 운영(안 제6조 및 안 제7조)
  -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
  - 동별 공중케이블 민원 수집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정비의뢰

### 다. 검토의견

- 공중케이블의 지속적 난립에 따라 도시미관을 훼손하고, 저층주거지의 관리 미흡으로 감전사고, 화재 등 인명피해의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공중케이블 정비추진단을 설치하여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 관계법령

## □ 전기통신사업법

[시행 2024. 1. 1.] [법률 제19856호, 2023. 12. 29., 일부개정]

제35조의2(공중케이블 정비의무) ①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에 설치되는 케이블(이하 이 조에서 “공중케이블”이라 한다)을 정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11.>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비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중케이블 정비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정비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, 2018. 12. 11.>

1.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
2. 공중케이블의 설치·철거 및 재활용 기준
3.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
4.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에 필요한 사항

③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며,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등을 제공·이용하는 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5. 1. 20.]

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2. 4.]